

예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김 문 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론

유네스코는 1980년 제21차 정기총회에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s)’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동 권고는 예술가들의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 종사상 지위와 무관하게 소득과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예술가들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소위 ‘예술가 권리장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유네스코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 예술인 지위 정보망(World Observatory on the Social Status of the Artists)’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법적 지위 확인은 물론이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문화예술 분야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쉽게 확인

이 되는데, 동 법에는 ‘문화산업’, ‘문화예술’, ‘문화시설’만이 정의 되어 있을 뿐, 문화예술 향유자인 국민과 함께 문화예술 공급자인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¹⁾

해외의 경우도 유네스코의 권고안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술인의 특수한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들이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예술인 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고, 일반 사회보장제도와 예술인의 특수성간의 괴리에 따른 문제점을 노르딕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그리고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별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1) 김상철(2008), 「예술인 복지제도를 당연하게 만드는 법제도안 메모」

2. 예술인에 대한 특별 지원제도 필요성의 근거

예술인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제도가 필요한 근거로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예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성이고, 두 번째는 예술인이 가지는 비전형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이 가지는 사회적·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이다. 각각의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성과 관련해서 유럽의회는 예술인들을 '상이한 분야에서 일하고 대부분의 경우 매우 강한 개성을 발전시키면서 유사한 위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사회기능단체(socio-professional group)를 형성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인들은 광부, 선원, 파일럿, 투우사 등의 여타 전문직업군과 맥락을 같이 하는 특별한 법률(rule)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²⁾

다음으로,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방식과 동기유발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비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 논리상의 비전형성: 보통 예술작업은 실업을 회피하거나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표출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
- 종사상 지위의 비전형성: 창작예술인의 대

부분은 자영자의 지위에서 임금근로자, 기업의 대표 또는 공무원으로 쉽게 지위를 전환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음.

- 국경초월(cross-border mobility)의 비전형성: 여타 노동자들에 비해 국경을 초월한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음.
- 경제구조의 비전형성: 대규모 다국적 그룹과 경쟁하는 무수히 많은 소규모 혹은 1인 기업들의 존재
- 경기변동 영향의 비전형성: 엄격한 의미로 예술가의 성과는 문화 영역을 뛰어넘어 패션, 디자인 위주의 소비재, 경제적 자산 개발, 관광, 전자공학, 소프트웨어 발달 등과 같이 대규모 산업부문의 핵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결과 평가에 대한 비전형성: 예술적인 성과와 영향력은 여타 시장의 성과와 동일한 척도로 측정될 수 없음.
- 재원조달의 비전형성: 문화부문에서의 예술적 혁신과 그 질은 '투자의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특별한 형태의 공적인 간섭도 필요로 하여, 공-사간 파트너십이 이런 문제 해결의 열쇠로 인식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술인들의 법적·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

2) European Parliament(2006), *The Status of Artists in Europe*.

국가의 전형이라 불리우는 스웨덴도 예외가 아니다. 스웨덴의 경우, 1997의 'Work for Artists'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약 25,000명의 전문 예술가 중 50%가 프리랜서 작가, 거의 40%가 자영자로서 종신계약(open-ended contracts) 예술가는 1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더욱이 이들의 종사상 지위는 자영자와 통상의 근로자 사이를 쉽게 오가고, 고용기간도 주로 단기에 그치고 있어 안정적으로 고용되기보다 법적·사회적 지위가 불안한 자영자가 되기를 강요당하는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실업보험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3. 일반 사회보장제도와 예술인의 특수성 간의 괴리 - 노르딕 국가를 중심으로

노르딕 모델에서 전체적인 사회복지모델과 창작 예술가들의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필요간의 긴장관계에서 야기되는 어느 정도의 압력(strain)이 존재한다. 여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공적연금제도에서 두고 있는 최저소득기준은 연간소득이 매우 낮아 제도에서 배제되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에게 제도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어려움은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을 수급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사전 전제하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덴마크의 경우는 일정 기간의 실업 이후에는 자신의 전문영역 이외의 일자리를 구하도록 강제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괴리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실업수당이나 공적연금의 경우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예술인들의 경우는 대체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무용가의 평균 은퇴연령은 45~47세 인데, 이는 일반적인 사회보장법의 규정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리고 일반 임금근로자에 비해 짧은 소득활동기간도 이 같은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이다. 둘째, 일반적인 연금제도에서 요구하는 최저소득 수준에 실제 예술인의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셋째, 특정한 유형의 소득, 예를 들어 노르딕 국가의 장기 예술인 수당(long-term artists' grants)과 같은 소득은 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넷째, 음악가, 무용가, 시각예술가와 같은 특정한 전문가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업무상 질병과 산업재해를 일반 제도에서 포괄하기 어렵다. 다섯째, 예술인들에게는 실업수당, 상병-장애, 연금과 같은 특정한 사회보장급여 계산에 있어서 인정되지 않는 연구나 훈련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노르딕 국가의 사회보장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괴리를 더욱 고착화 시키는 측면이

3) Hellmark, Ann-Britt, *Report highlights artists' social security problems*,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3.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예술인들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던 노르딕 국가의 복지제도 개혁이 예술인들을 일반 사회보장제도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노르딕 국가의 최근의 연금제도 개혁과 예술인 수당제도 변천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공적 연금제도

스웨덴은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목확정기여(NDC) 제도를 일찍이 도입한 바 있다. 명목확정기여 제도는 전통적인 확정기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부과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실제로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 가입자 개인의 보험료 납부액 및 실질 임금 상승분 조정액을 가입자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과방식부분에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명목확정기여제도라 부르고 있다.⁴⁾

이 같은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정치적으로도 용이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⁵⁾ 하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스웨덴의 이 같은 연금개혁은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구 제도에서는 퇴직 전 15년간의 소득을 연금 산정 기준소득으로 하였으나, 명목확정기여 제도로의 개혁 후에는 근로기간을 늘리고,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을 제고할 목적으로 생애소득을 연금급여에 연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대체적으로 고학력의 생애근로기간이 짧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⁶⁾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불리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소득기간이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에게는 더욱 불리하다 할 수 있다. 더구나 실업, 육아휴직 등의 기간은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근로기간을 가지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⁷⁾ 따라서 스웨덴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용이한 연금개혁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 상이한 특성을 가진 예술인들을 일반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제도에 적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한 점은 비판을 피

4) 윤석명(2000), 「공적연금과 명목확정각출제도」, 『보건복지포럼』, 43호.
 5) 윤석명·김문길(2005), 「연금개혁 대안으로서의 NDC 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21(2)
 6) EU 27개국 문화분야 노동력의 특성을 보면, 문화분야의 고학력자가 47.7%로 전체 노동력의 고학력자 비유인 25.9%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문화분야의 비임금근로자는 29.0%인데 비해 전체 노동력의 비임금근로자는 13.7%인 것으로 나타남 (EUROSTAT, 2007, "Cultural Statistics", EUROSTAT Pocketbooks).
 7) 스웨덴 예술인노조는 연금개혁 이후 예술 분야별로 기대연금액 손실분을 계산해서 발표한 바 있음. 공공 오페라하우스의 솔로 연주자 35%, 공공 무용단의 무용가 18%, 프리랜서 무용가 12%, 공공 극장 배우 36%, 프리랜서 배우 28%, 프리랜서 대중음악가 24%, 성공한 소설가 16~30%(European Parliament, 2006, *The Status of Artists in Europe*).

하기 어렵다.

(2) 예술인 수당제도

원래 예술인 수당은 예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뛰어난 예술적 성취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수당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통합화 과정에 따라 수당 제도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장기수당(long term grant)이 과세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로 지출되며 실업급여와 연금수급권 적립을 보장하는데 쓰이게 되었다. 이 같은 수당의 '임금화 과정(salarisation process)'은 이미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모든 형태의 예술인 지원제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스웨덴의 장기수당도 이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 핀란드도 이 과정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어서 예술심의회(Arts Council)가 지급하는 장기 예술인 수당을 수급하는 예술인들도 공적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4.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제도 운영의 사례

몇몇 국가들은 예술인의 특수성과 일반사회보장제도간의 괴리에 따라 예술인이 일반사회보장제도로부터 충분히 보장을 받기 어려운 점

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제도적 장치는 예술인을 위한 특별 사회보장제도의 형태로부터 예술인 노조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는 보충연금제도의 형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 급여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 예술인으로까지 확대한 벨기에

벨기에는 1969년 11월 28일 국왕 칙령(Royal Decree)에 따라 모든 무대공연 예술인은 임금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는데, 여기에는 독립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벨기에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수당을 받았던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 벨기에는 기간제 근로와 관련되는 고전적인 문제들에 직면하여, 국립예술강령(National Platform of Artists)(1999/2002)을 통해 시각예술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예술분야에서 고용계약을 강제하였다.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2002년 12월 24일 재정법(Finance Act)으로 사회보장을 위한 예술가의 새로운 지위를 확정하여, 예술가들로 하여금 임금근로자의 지위와 자영자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영자 지위를 선택할 경우는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여하였다.

동 법의 취지는 예술인들을 질병, 장애, 건강, 가족, 실업, 노령, 산재 등으로부터 완전하게 보장(complete coverage)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술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가협회(Commission of Artists)는 국립사회보장청(National Social Security Office)과 국립자영자 사회보험기관(National Institute of Social Insurance for Self-employed Workers)으로부터 공무원을 선임하여 예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예술가에게 자영자 지위 신고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자영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독일은 자영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Kunstlersozialkasse" - KSK)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예술인들은 건강, 연금, 실업 등에 있어서 여타 근로자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에 자영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1970년대 초반, 독일의 연방의회는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연방정부는 1983년 자영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회보험제도 Kunstlersozialkasse(KSK)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탄생한 KSK는 가입된 예술인들에게 건강보험, 노령연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실업급여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실업급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KSK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예술활동에 따라 얻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약 35% 수준이며, 정규의 사회보험과는 달리 소득기준점(income threshold)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개별 예술가(50%), 연방정부(20%), 예술가의 작업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30%)이 분담하며, 이들 기업에는 출판사, 언론사, 사진 및 PR 대행사, 극장,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벤트 기획사, 방송사, AV와 음악제작사, 박물관, 갤러리, 서커스단, 예술인 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KSK에서 평가를 해서 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의 일정비율(2006년 기준, 5.5%⁸⁾)을 징수하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 145,000명의 예술인들이 KSK에 가입되어 있고, 시각예술인/디자이너가 38%, 음악가 또는 작곡가가 26%, 그리고 작가(authors), 번역가, 프리랜서 언론인이 25%, 그리고 배우, 감독, 공연예술인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을 위한 조건으로 자영자일 것, 예술작업을 통해 연간 3,900유로의 최저소득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예술학교 졸업생과 같은 신입 예술인들은 최소소득규정에서 3년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KSK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2008년 2월 현재 10,000유로 기준으로 4.9%였음.

Social Services Highlight

(3) 작가와 창작 예술인을 위한 특별사회보장체계를 보유한 프랑스

1964년 12월 26일 화가, 조각가, 판화가를 위한 건강-모성-노령에 대한 보장을 위한 법을 제정한 이후, 1975년 12월 31일 모든 문학, 음악, 시각 예술인들을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에 포괄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두 개의 기관이 창설되었는데, 하나는 시각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 이고 다른 하나는 작가, 사진작가, 작사가, 작곡가를 위한 'AGESSA'이다.

작가와 조형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체계는 일반 임금근로자 제도의 일부(branch)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입자의 기여와 국가, 공공기관, 지역 공동체 등의 배급자 및 이용자의 기여금으로 기금이 조성되며, 작가와 조형 예술가의 보험료는 상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질병, 모성, 장애, 노령연금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동 제도와 관련하여 별도 가입한 보험으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장,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시각 예술인들의 교육훈련 기관 설립, 그리고 기존의 긴 기여-수급간 기간의 단축 등의 문제가 현안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9) 화가, 조각가, 음악가, 작가, 극작가(playwright)는 ENAPPS(Ente Nazionale di Assistenza e Previdenza Pittori, Scultori, Musicisti, Autori Drammatici)에 가입해야 함.

(4) 공연예술인을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를 가진 이태리

이태리는 1930년대부터 공연예술인들을 위한 특별사회보장(ENPAL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주로 공연예술인과 극장 및 오디오 비주얼 산업(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음향녹음)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NPALS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위해 고용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태리 법은, 이 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예술인을 사용자들이 고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공연예술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ENPALS에 가입하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 1인당 하루에 25유로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연금과 건강보험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라이브 무대 근로자는 ENPALS에 가입해야 하며,⁹⁾ ENAPLS 가입요건은 모든 회원들이 동일하지는 않고 고용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공연예술인들에게 일반 체계에 등록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연금을 제공하며, 실업급여 적용에 있어서 라이브 무대 근로자들은 임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ENPALS는 무용가, 배우, 모델 등에 특별장애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여금은 일반 제도가 일주일 기준인 반면, 예술

가들은 일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차이가 있다.

이태리 예술인 사회보장의 특징 중 하나는 ENPALS 기금 가입의무가 임금근로자이건 자영자이건 해당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예술인이 대상이 된다. 첫째, 확정된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수행하거나 라이브 무대 쇼의 제작과 감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배우, 가수, 감독, 무용가 등), 둘째, 역시 확정된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지만 위의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상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명기사 등), 셋째, 모든 종신계약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수급을 위한 특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인은 종종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필요 근로일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5) 자영 예술가들을 위한 소득지원(income supplement)을 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Grand Duchy of Luxemburg는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재정지원제도(special system of time-based financial assistance)를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1999년 7월 30일 법에 대한 2004년의 개정의 결과이다. 동 법은 자영 예술인과 ‘기간제 예술인(intermittent artists)’을 위한 포괄적

인 사회적, 재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활동에 보다 적합한 특별한 조세제도(tax measure)와 유럽 정부들이 채택한 공공건물의 예술작품 구매 규정과 같은 제도를 포함한다.

자영 전문 예술인들과 기간제 예술인의 이 같은 지위의 주요 이점은, 일정한 조건 하에,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동안 문화사회기금(Cultural Social Fund)으로부터 재정지원과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앙페르미팡 제도¹⁰⁾를 모델로 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모델은 프랑스처럼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인된 자영 전문 예술인의 지위는 문화장관에 서면 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위는 특별 위원회에 의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지원 전 3년간 전문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최소 3년이라는 기간은 법이 인정하는 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2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

(6) 예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WWIK¹¹⁾)을 지원하고 있는 네덜란드

크리에이터, 작가, 공연예술인 등과 같은 예술인들의 낮은 소득수준에 대한 특별법인 WWIK는 1999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동 법은 충분하

10) 프랑스의 공연, 음악, 영화, 방송 등에 기간제로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급여제도(Intermittents du Spectacle)
11) Artists' Work and Income Scheme Act

지 못한 소득을 얻는 예술인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10년의 기간 동안 최대 4년간 보충소득(supplementary income)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동 법은 네덜란드의 일반사회보험법(ABW)과 평행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WWIK의 목적은 예술인이 창작관련 사업을 하거나 예술활동을 통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동 법은 최근(2004년) 예술인들이 점진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명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WWIK 수당은 지방사회서비스국이 매달 지급하는 형태로 먼저 만들어진 이후, 건강보험과 장애보험을 추가하였다. 수당 금액은 일반 복지지원의 70% 수준이다. 예술인이 한 번 법정최저선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수당지급은 중지된다.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으로부터 최저소득의 125%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구직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관련 모든 지원서비스(훈련, 조언, 교육)를 받을 수 있다.

WWIK 수당의 수급여부는 특별예술인기금(special artists' fund)에서 결정한다. 예술인은 자신들의 예술활동과 낮은 소득수준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동 법의 시행은 20개의 중앙자치단체로 분권화하여 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먼저 실시하고, 사후에 사회부장관(Ministry for Social Affairs)으로부터 상환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5. 시사점 및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유럽 국가들은 예술인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방법으로 기존의 일반 사회보장제도로 포괄하는 방법과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법론상의 차이는 유럽 국가군별로 구분이 되는 듯하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노르딕 국가는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일반제도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인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다수의 서유럽 국가는, 역시 일반제도에서 예술인들을 포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제도에서 충분히 포괄이 되지 않는 예술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의 유형은 일반제도에 예술인들을 적용시킴으로써 예술인들의 제도적용의 포괄성을 확대한 점과, 별도의 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급여 수급요건 확보나 급여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자의 유형은 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제도라는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진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노동시장과 관련한 보장을 적절하게 마련하지 못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의 사례로부터 우리

해외제도 하이라이트

가 얻을 교훈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문화예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지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 해 전 우리나라 예술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일명 ‘구분주 사건’¹²⁾은 우리나라 예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 마련

의 논의는 이들의 특수한 지위와 예술활동의 사회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이 선행된 이후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일반사회보장제도에 어떻게 이들을 효과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해외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CSST](#)

12) 2003년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조각가 구분주의 사고보상 과정에서 그를 60세 정년의 일용직 노동자로 취급해버린 보험사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의 연대를 통한 투쟁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낸 사건